

TIPLONews 한국어본

2025 년 8 월호(K312)

이달의 주제

K250704Y1

K250703Y1

01 정전용량방식 터치패널 특허침해건, Elan 은 ILITEK 와 NeoView 를 제소

IC 설계 대기업 Elan¹⁾은 2025 년 7 월 3 일에 중요 정보 공시를 통하여, ILITEK²⁾와 그 대리상인 NeoView³⁾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하며, 이들의 터치 패널 IC 제품이 Elan 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lan 은 선임 변호사의 판단하에, ILITEK 가 제조 및 판매하는 정전용량방식(靜電容量方式) 터치 패널이 Elan 의 발명 특허(I425402)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ILITEK 와 NeoView 를 상대로 대만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Elan 은 회사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특허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ILITEK 와 NeoView 의 특허 침해를 배제하고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2025.07)

역주:

- 1) 중국어명 義隆電子股份有限公司, 영어명 Elan Microelectronics Corp. (Elan)
- 2) 중국어명 奕力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 Ili Technology Corp. (ILITEK)
- 3) 중국어명 碩望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 NeoView Technology Inc. (NeoView)

K250724Y2

K250623Y2

02 상표법 「비전통 상표 심사기준」 수정, 2025년 8월 1일부터 유효

대만 지혜재산국¹⁾에 의하면, 상표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수정 시행되었다. 수정안에는 상표 이미지의 기능적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점선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이 상표의 일부가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상표법 제 30조 4항)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상표법 제 12조 1항의 10 및 제 13조 2항)도 수정 시행되었다. 상표법 및 시행규칙의 수정에 따라 이번에 「비전통 상표 심사기준」의 수정안도 마련되었다. 이 수정안은 2025년 7월 23일에 공표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표의 도안에서 기능성 부분의 처리 원칙을 명확히 한다.
 - (1) 상표 도안에서 기능적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
 - (2) 점선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분이 상표의 일부가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
2. 상표의 도안을 점선으로 표시하는 경우, 점선이 기능성을 갖고 있는 부분을 나타내거나 또는 지정 상품 혹은 서비스에 사용하는 내용 형태 등의 식별성을 가지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임을 설명하여야 한다.(상표법 시행규칙 13조 제 2항), 그리고 이것에 의해 상표의 도안 심사를 도와주고, 상표권의 범위를 한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비전통적 상표가 보호하는 주요 식별 특징은 전통상표의 평면 특징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 (1) 비 전통적인 상표가 보호하는 주요 식별 특징은 색상, 입체 형상, 움직임, 홀로그램 및 소리 등이다.
 - (2) 입체상표를 예로 들면, 식별 특징이란 제품 자체 또는 포장 용기 등 3차원 공간이 갖는 길이, 너비, 높이가 형성한 입체적인 상업적 인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문자, 도형, 기호 등만의 특징을 상품의 특정 위치에 점선으로 표시하거나 형상 부분의 권리 불요구를 표시하거나 한다. 등록하고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입체상표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출원인은 설명을 보정하거나 전통적인 평면상표의 등록출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4.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3 차원 상표의 외관을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설명하기 위해, 출원인은 3 차원 형상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상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단일 출원에서 여러 종류에 대한 사용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종류별로 그 입체 형상의 형태를 특정해야 한다.
5. 심사 실무의 필요에 부응하여 최근 판례와 수정 판례에 대한 상표 설명을 시기적절하게 추가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참고 자료로써 활용할수 있게 제공한다. (2025.07)

역주:

- 1) 대만 지혜재산국은 대만 經濟部 智慧財產局을 지칭하며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한다.

TIPLO
Attorneys-at-Law

K250717Y3

03 대법원은 Cha Yi 가 제기한 「일곱 공기밥」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

Cha Yi¹⁾은 Yi Pin Xiang²⁾이 「일곱 공기³⁾」과 「입맛다심(침없음)」⁴⁾ 도안에 대한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혜재산 및 상업 법원은 1 심과 2 심 모두 Cha Yi 식품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은 Cha Yi 의 항소를 기각했다.

1971 년, 리둥위안(李東原)과 그의 동생 리추이신(李垂欣)은 타이중(台中)에서 떡가게를 운영했다. 이후 리둥위안(李東原)은 북쪽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확장했으며, 1985 년부터는「일곱 공기」과 「입맛다심(침없음)」이라는 도안을 상표로 등록하고, Cha Yi 와 Seven Wonder⁵⁾을 설립했다. 리추이신(李垂欣)은 타이중(台中)에 Chi Qi Wan⁶⁾을 설립하고 량이치(梁宜琪)와 결혼했다. 그런데, 양당사자는 이혼 후 량이치(梁宜琪)가 사업을 이어받아 Yi Pin Xiang 으로 개명했다.

Cha Yi 는 량(梁)씨와 Yi Pin Xiang 이 2009 년 10 월, 「일곱 공기」와 「입맛다심(침없음)」 도안을 무단으로 복제 또는 수정하고, 「일곱 공기밥」⁷⁾과 「입맛다심(침있음)」⁸⁾ 등 유사 상표 5 개를 상표로 등록하여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은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84 만 대만 달러의 공동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Yi Ping Xiang 은 Cha Yi 의 「일곱 공기」 상표는 만료되었고, 「입맛다심(침없음)」 상표는 등록이 이미 취소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Cha Yi 는 2009 년 6 월 「일곱 공기」상표를 량(梁)씨에게 증여 및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Yi Ping Xiang 은 리둥위안(李東原)의 동의를 받아 2009 년 10 월 「일곱 공기밥」 상표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Yi Ping Xiang 에 해당 상표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따라서 Yi Ping Xiang 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은 1 심에서 「일곱 공기」와 「입맛다심(침없음)」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며, Cha Yi 가 저작권자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량(梁)씨가 리동위안(李東原)에게서 「일곱 공기」 도안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일곱 공기밥」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Cha Yi 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입맛다심(침있음)」의 경우, 비록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Cha Yi 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Cha Yi 는 항소했고, 2 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했다. Cha Yi 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2025.07)

역주:

- 1) 중국어명 嘉義食品工業股份有限公司, 영어명 Cha Yi Food Industries Co., Ltd (Cha Yi)
- 2) 중국어명 懿品鄉食品有限公司 (Yi Pin Xiang)
- 3) 중국어 원문의 吃七을 의역하였다.
- 4) 중국어 원문의 張嘴舔舌(無口水)를 의역하였다.
- 5) 중국어명 呷七碗食品有限公司, 영어명 Seven Wonder Foods Co., Ltd. (Seven Wonder)
- 6) 중국어 원문의 회사명은 吃七碗食品 (Chi Qi Wan)
- 7) 중국어 원문의 吃七碗을 의역하였다. 원고의 상표는 吃七인데 반하여 피고는 그릇을 나타내는 碗 글자를 추가하였다.
- 8) 중국어 원문의 張嘴舔舌圖(有口水)를 의역하였다. 원고의 상표는 침을 흘리지 않고 입맛을 다시는 모양인데 반하여 피고의 상표는 침을 흘리며 입맛을 다시는 모양의 상표이다.

K250722Y5

K250721Y5

04 대만 AI 로봇산업연맹 공식 출범

대만 AI 및 로봇 산업 연맹은 2025년 7월 22일 오전 발족식을 열고 대만의 AI 및 로봇 산업 자원을 통합하여 기술 자립, 산업 고도화, 그리고 국제표준에 궤를 같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연맹은 또한 2030년까지의 4대 주요 개발 목표를 발표하고, 총 생산액 1조 대만달러(NTD)를 초과하는 웅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 연합은 대만기계공구 및 부품산업협회¹⁾, 대만기계공업협회²⁾, 전기전자공업협회³⁾, 타이베이(台北)컴퓨터 산업협회⁴⁾, 대만클라우드 컴퓨팅 및 IoT 산업협회⁵⁾, 대만지능형자동화 및 로봇협회⁶⁾ 등 6개 주요 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출범하였으며, AI 로봇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업계의 결의를 상징한다.

연맹이 2030년을 내다보며 세운 4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 탑재형 로봇, 보행 로봇, 인간형 로봇, 특수 용도형 로봇 등 대만산 로봇 플랫폼 4종 5개 모델을 개발하여 다양한 응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2. 4대 주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중요부품의 국산화를 실현한다. 이런 4대 주요 시스템에는, 의사결정 시스템, 구동제어 시스템, 감지측정 시스템 및 동력 시스템이 포함되며 독립적인 MIT (Made in Taiwan) 공급망을 구축한다. 3. 8대 주요 응용 분야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구체화한다. 이런 8대 주요 응용 분야는 의료, 물류, 농업, 제조, 간병, 요식업, 재난 구호, 순회검사 등이 있다. 4. 2030년까지 대만의 전체 AI 로봇 총생산액은 1조 대만 달러를 초과하여 국산화와 국제화의 이중 축 전략을 결합하여 제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 및 내수 시장을 확대한다.

연맹은 정부가 로봇 응용 프로그램 실현과 법규 개선을 지원하고, 이에 의거 독자적인 기술과 글로벌 산업 체인 구축이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5.07)

역주:

- 1) 원문의 台灣工具機暨零組件工業同業公會를 의역하였다
- 2) 원문의 台灣機械工業同業公會를 의역하였다.
- 3) 원문의 電機電子工業同業公會를 의역하였다.
- 4) 원문의 台北市電腦商業同業公會를 의역하였다.
- 5) 원문의 台灣雲端物聯網產業協會를 의역하였다.
- 6) 원문의 台灣智慧自動化與機器人協會를 의역하였다.

TIPLO
Attorneys-at-Law